

구간경계조정의건 심사 결과 보고서

1993년 5월 25일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3년 4월 2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3년 4월 2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21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1993년 5월 24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허병태)

가. 제안 이유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회에서 분구 건의안을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우리구의 수영동, 망미1,2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 신설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
에 대해 이를 부산직할시 남구 의회의 의견 수렴 요청이 있어 제안합니다.

나. 주요 골자

○ 가칭 연산구 신설(안)

구 분	관 할 동	면적	인구	비 고
연 산 구	계 16개동	13.41Km ²	325천명	
	동래구 연산 1-9동 (9개동)	8.15 //	196천명	
	남 구 수영, 망미1.2동 (3개동)	3.19 //	77천명	
	진 구 양정 1-4동 (4개동)	2.07 //	52천명	

○ 연산구 신설에 따른 남구 편입 대상 지역 - 수영동, 망미1.2동 전지역

○ 우리구의 현재 여건

구 분	관할동	면적	인구수	가구수	통 수	반 수	비 고
현 재	30개동	34.30Km ²	547,708	150,271	937	4,628	
연산구 편입	3개동	3.19 //	77,332	21,090	121	612	
편 입 후	27개동	31.11 //	470,376	129,181	816	4,016	

○ 동래구 분구 건의안에 대한 남구청장 의견

- 현행 우리구는 30개동 547천명의 인구만으로도 분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대연동 낙농부락 일대 및 군부대 이전지의 아파트 건립등으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됨으로
- 남구 일부지역을 동래구 분구 대상지역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남구가 분구되어야 바람직할 것임.

다.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1) 지방자치 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 분합할때는 법률로서 정하되 시군및 자치구의 관할 구역 경계 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무상)

동래구 의회에서 의견 수렴 요청한 구간 경계 조정의 건을 검토해 보면, 동래구 의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을 초과하고 자체 수입, 인구 등 제반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제반 여건이 현 행정 체계로서는 효율적인 행정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때는 분구에 적합한 요건이 충족되어 진다는 내부부 지침과 지방자치단체를 폐지, 분합하거나 그 명칭 또는 구역을 변경할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4조에 따라 동래구 의회에서는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현 동래구의 기본 현황을 살펴보면, 27개동에 28.77km²의 면적에 607,485명의 인구로 가구수는 165,414호가 되고 관할 행정구역에 동래경찰서와 연산경찰서로 치안 지역이 양분되어 있는 등 행정 조직과 경찰 조직등의 문제점에 따른 동래구 의회의 판단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우리구를 살펴보면 30개동에 34.30km² 면적 및 547,000명의 인구로서 내무부 지침상 50만명 기준에 47,000명이 초과되고 있으나 대연사거리, 수영로타리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을 비롯한 상가 지역과 황령산 주변의 적정한 공간 휴식지 및 놀이터, 문화회관, 시립박물관을 비롯한 문화공간, 수영성을 포함한 문화 유적지등이 산재되어 있고 또한 타지역에 비해 쾌적한 주거환경지역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등 도시 기반 조성이 비교적 우리구는 잘되어 있으며 특히 우리구의 지역 위치등을 감안할 때 항후 해운대 신도시 건설과 흐름이 같아 질 수 밖에 없다 할 것입니다.

남구가 명실공히 부산 남부지역의 중심지로서의 인접구와의 기능을 원활히 해주고 도시 전체의 균형적이고 조화적인 형성을 위해서는 제반 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 각 분야가 비교적 균형을 잘 이루고 있어 우리구의 입장에서는 분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또한 동래구 의회에서 편입 요청하고 있는 수영일대는 조선시대에 낙동강 동쪽에서 경주까지 우리나라 동남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 철도 사영이 있든 곳으로서 그 역사성과 더불어 전국적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널리 인정되어 왔으며 부산시에서도 시지정 문화재(17호)로 기 지정한바 있음을 감안할 때 이는 우리 남구민의 공지요 자랑인 역사적 가치가 있음은 부인할 수 없고 또한 우리구의 전통 민속인 수영야류는 이조 말기 권력층의 부패상을 춤으로서 표현하여 설움받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한을 풀어주었으며 또한 부패된 권력층에게 각성을 촉구한 것으로서 각종 민속 경연대회에서 역사적 가치와 함께 후손들에게 전래되어 오고 있으며,

선조 14년 임진왜란 당시 조국을 위한 충절의 25의 용단의 '장렬한 전사는 지금도 구민, 학생들에게 정신적 자주가 되어 있는 등을 감안할 때 수영, 망미의 다른 구로의 편입은 남구의 혼과 정신이 살아있는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의 고찰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으로는 대연동 낙농부락 및 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추후 행정 및 인구의 증가로 분구의 필요성이 상존한다하여도 자체 분구등을 통한 우리구의 특성과 지역적 여건의 충분한 감안 여론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면서 본 건은 우리구의 입지에서 판단해 볼 때 수영, 망미 지역의 가칭 연산구 편입은 부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조해수 위원	총무과장 허병태	부산진구도 가칭 연산구에 편입되는 4개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진구의 의견은 어떠한지?	부산진구도 인구가 50만이 넘는 구로써 우리구와 같이 분구가 필요하지 양정동을 가칭 연산구에 떼어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주만보 위원장	"	우리 위원들은 가칭 연산구에 우리구 3개동을 떼줄 수 없다는 의견이 집약된 것 같은데 총무과장의 의견은?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남구청장 의견과 동일함.
이태희 간사	"	타구에서 부탁한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이 아니라 남구 자체 분구 의견이나 건의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 보겠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심사 결과 : 구간, 경계 조정의 건에 대한 총무위원회 의견서 채택(의견서 별첨)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區間 境界 調整에 대한 意見書

부산직할시 동래구 의회에서 분구 전의안을 부산직할시에 제출한 내용 가운데
우리구의 수영동, 망미1,2동 지역을 가칭 연산구 신설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현재 우리 남구는 면적 34.30km²에 30개동, 55만여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어
내부부 지침상의 자체 분구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을뿐 아니라
- 앞으로 대연동 낙농부락 및 군부대 이전 지역등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예상되어
급격한 인구 유입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 특히, 동래구 의회에서 편입 요청하고 있는 수영, 망미 지구는 우리나라의 동남
해안을 방어했던 해군의 본영인 경상좌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는 곳으로서 수영
성지, 25의용단, 수영야류등 그 역사성과 더불어 유형, 무형 문화재가 소재해
있는 곳으로 우리 남구민의 긍지와 자랑이 살아 숨쉬는 유서깊은 고장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만을 가칭 연산구에 편입시킨다는 것은 구민의 정서에도 부합되지
않음.
- 따라서 우리구 의회에서는 수영, 망미 지구의 가칭 연산구 편입에 동의할 수 없으
며 향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등으로 분구의 필요성이 초래할 경우 자체 분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함.

1993년 5월

부산직할시 남구의회